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039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천, 구태형

변론 종결 2024. 7. 19.

판결 선고 2024. 8. 9.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2. 10.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8. 접수 제153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제1채권의 발생 및 양수 가) C은 2019. 7. 18. 주식회사 D(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D은 그 다음날 C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20. 2. 28.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4. 8. 'C은 원고에게 32,323,994원 및 그중 29,549,27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204991호). 위 지급명령은 2020. 4. 28. 확정되었다.

2) 제2채권의 발생 및 양수 가) E은행은 C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그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7. 15. 'C은 원고에게 1,151,348원 및 그중 800,000원에 대하여 202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230511호). 위 판결은 2022. 8. 9.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F(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인 피고와 G, H, C은 망인이 2019. 11. 21. 사망하자 망인의 재산을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2)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와 G, H, C은 2022. 10. 27.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8. 접수 제153651호로 2019. 1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2022. 10. 27.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제1, 2채권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 2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사해행위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대현

별지

- 1) 이는 2020. 4. 14.이다.
- 2) 피고는 2019. 11. 21.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그 작성일자가 '2022. 10. 27.'로 되어 있는 점,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이 사망한 당일 긴급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11. 21.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2019. 11. 21.'로 기재된 것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라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을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G, H,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지기 직전인 2022. 10. 27.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